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(보험급여과-6005호, 2021.12.1.)
- 나.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(보험급여과-6104호, 2021.12.6.)
- 다.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(보험급여과-6410호, 2021.12.20.)
- 라.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6499호, 2021.12.23.)
- 마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(제4-3판) 개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6186호, 2022.2.21.)
- 바.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 운영방안 통보(중앙방역대책본부-6196호, 2022.2.21.)

2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산정 가능한 수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 변경사항

구분	기존	변경
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(대상환자)	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<u>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	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<u>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</u>
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관리료 (수가명)	코로나19 <u>항체 치료제</u> 관리료	코로나19 <u>주사치료제</u> 관리료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서」 (중앙방역대책본부)

○ 적용기간

- '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' 및 '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' 는 기존 렉키로
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(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 대해서는 2022.2.28.
진료분부터 적용

※ (문의) 외래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, 지원방안 등 :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
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청구 관련 : 보험급여과

- 붙임 1.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산정방법 안내 1부.
- 2.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산정방법 안내 1부.
- 3.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산정방법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
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
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
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2022.2.24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047 (2022. 2. 2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